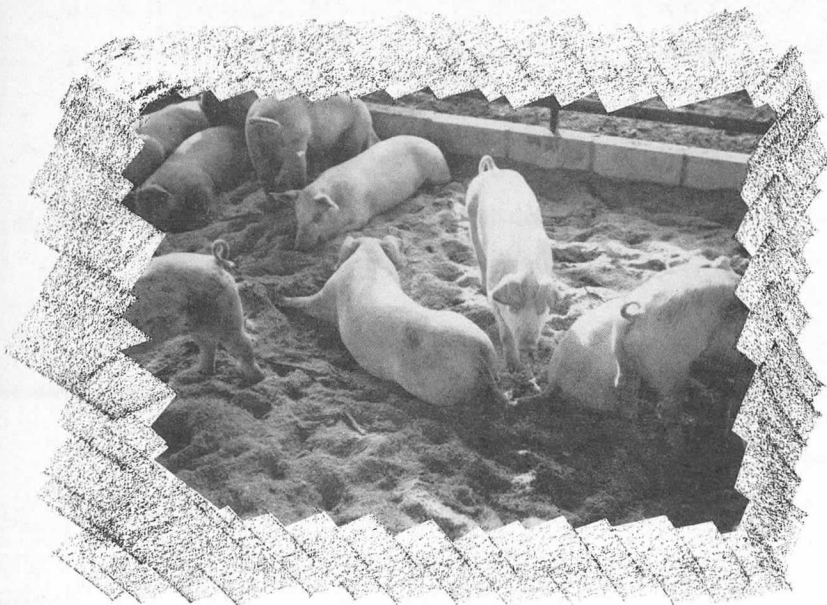


'91 축산분뇨 처리정책



신 현 국

(환경처 오수관리과장)

1. 머리말

돌이켜 보건데 지난 '9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축산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국외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진전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수입개방 압력에 시달려 국내 축산업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름대로 부심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축산폐수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대규모 기업축산농가들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축산농가 역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축산인과 정부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많은 노

력을 한 것 역시 사실이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율도 꾸준히 늘어났으며,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간이정화조 설치도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는 작년 한해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올해에는 부분적이거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 한 해라고 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이와같은 노력은 올 '91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축산농가의 노력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 '91년 정부의 축산폐수 처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정부의 주요한 시책을 몇가지 소개하여 축산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축산오염실태 및 규제현황

1) 오염실태

'90년말을 기준으로 소·돼지의 사육두수는 약 7백만두로서 하루 약 8만7천톤의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를 방류량 측면에서 타 오염원, 즉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지나지 않으나, 수질오염 기여도 측면에서는 17%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축산폐수가 고농도 유기성 폐수로서 타오염원에 비해 오염농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표1〉 참고).

따라서 축산폐수는 배출량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나 이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축산폐수가 주요 호소의 부영양화를 유발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1〉 가축 마리당 오염 발생량

구 분	배출량(ℓ/일)	BOD(mg/ℓ)	BOD부하량(g/일)
소	30.0(30배)	20,000	600
돼 지	5.0(5배)	33,000	165
말	30.0(30배)	20,000	600
닭	0.2(0.2배)	65,000	13
사 랑	1.0	25,000	2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의 경우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축산폐수의 방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규제현황

정부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대

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81년부터 환경보전법에서 방류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87년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 세부규제 내용은 〈표2〉와 같다. 따라서 규제대상이 되는 축산농가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정화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표2〉 대상별 규제기준

근거법	설 치 대 상	배 출 허 용 기 준
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사 1,400㎡ 또는 1,000마리 이상 ○ 우사 1,200㎡ 이상 또는 100마리 이상 ○ 마사 1,200㎡ 이상 또는 100마리 이상 * 특별청소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은 상기내용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3,000㎡ 이상 : BOD 30~100mg/ℓ ○ 1일 3,000㎡ 이하 : BOD 30~150mg/ℓ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사 : 500㎡ 이상 1,400㎡ 미만 (특별청소지역 : 250㎡ 이상 700㎡ 미만) ○ 우사 : 700㎡ 이상 1,200㎡ 미만 (특별청소지역 : 350㎡ 이상 600㎡ 미만) ○ 마사 : 1,000㎡ 이상 1,200㎡ 미만 (특별청소지역 : 500㎡ 이상 600㎡ 미만) ○ 계사 : 1,000㎡ 이상 (특별청소지역 : 5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ℓ/일 미만 : BOD 2,500mg/ℓ 이하 ○ 3ℓ/일 미만 : BOD 2,000mg/ℓ 이하

3. 축산폐수 관리의 기본 방향

'91년 정부의 축산폐수관리의 기본방향은, 첫째,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축산폐수 관리법의 정비이며,

둘째, 규제미만 영세 축산농가 축산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지원이며,

셋째, 축산농가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다.

1) 축산폐수 관련법의 정비

종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던 것을 이를 일원화하여 축산폐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가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안의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체계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며,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폐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축산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지난 '90년 정부에서는 팔당·대청호 유역내 규제미만 밀집 영세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는 국내 축산업의 특성상 전체 축산농가의 70% 정도가 규제미만 영세농가이며, 이러한 농가들로부터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판단하에 수질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적정처리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실시된 사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공동처리 시설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산재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축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3)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또한 정부에서는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양축농가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91년에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총 520억의 예산으로 영세농가 간이정화조 설치비 지원,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농가 정화시설 설치비 지원 및 축분처리장비구매비 지원 등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규제대상인 경우 정화시설의 설치에 주력하여야겠고, 또한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간이정화조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겠다.

4. 맺음말

올해도 축산인에게는 결코 편안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입개방 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 등 여러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외에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국민들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이제 우

리의 국토는 과거와 같은 자정능력이 많이 상실되었으며, 이제는 인위적이며 대대적인 정화노력 없이는 깨끗한 환경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 축산인들도 깊이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규제대상 농가의 경우 정화시설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정 시설의 설치를 서둘러야 하겠으며, 이의 관리 또한 소홀히 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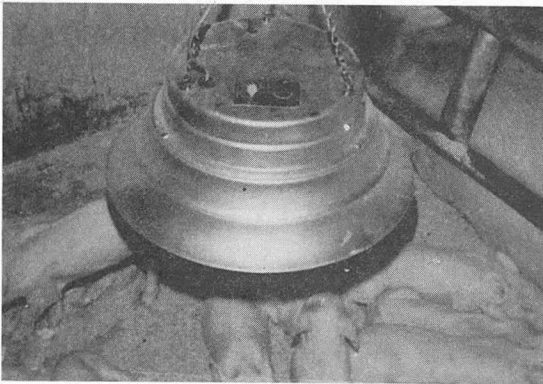
안되겠다. 또한 규제미만 농가의 경우라도 간이정화조의 설치 등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올 '91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축산농가 그리고 관련 협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감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보온등 대체품

보 온 기

전기를 사용하므로 산소부족현상이 없고 설치가 간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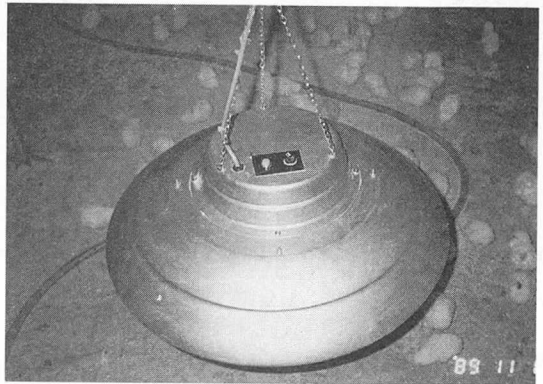
소형보온기 250, 300 와트

갓난돼지, 송아지용, 직경40cm, 1.6kg

납품처 : 제일 종축, 두산개발, 선진축산, 제일제당등

수 명 : 8년째 사용중인 농장이 있음.

(실용 및 의장특허품 이오니 복제하지 마시오.)



대형보온기 500, 1000 와트, 송아지,

젓 떼돼지, 병아리용. 직경58cm, 2.4kg

豊裕 振 商 社

100-6444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4456호

전화 : (02) 888-5704

FAX : (02) 886-4144